

# 예 산 총 칙

## 2017년도 추경1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546,760,000	16,402,800
일 반 회 계	536,300,000	16,089,000
일 반 회 계	536,300,000	16,089,000
특 별 회 계	10,460,000	313,8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	458,000	13,74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37,000	28,11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439,000	13,17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	3,954,000	118,62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34,000	1,020
주차장특별회계	4,638,000	139,14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,257,946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4,620,270천원, 목적예비비 15,637,676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